

제 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① 「6개월·1년·2년·3년·5년 금융채연동대출」에서 적용하는 「6개월·1년·2년·3년·5년 금융채연동대출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전 3영업일간 「6개월·1년·2년·3년·5년 시장금리」의 단순평균수익률에 「정책계수」를 가산하여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6개월·1년·2년·3년·5년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3개월 CD유통수익률」을 사용하는 「CD연동대출」에서 「3개월 CD유통수익률」이라 함은 대출실행일전 3영업일간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의 단순평균수익률을 말하며, 매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3개월 KORIBOR」를 사용하는 「KORIBOR 연동대출」에서 「3개월 KORIBOR」라 함은 대출실행일 전 3영업일간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3개월물 금리의 평균값을 말하며, 매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수신금리 연동대출」은 수신금리가 변동되는 날에 대출이자율이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제1항의 「기준금리」 산출 시 사용되는 「6개월·1년·2년·3년·5년 시장금리」와 「정책계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1년·2년·3년·5년 시장금리」는 각각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AAA금융채 유통수익률」을 말합니다.
 2. 「정책계수」는 특정 상품이나 특정 자산/부채에 대하여 은행의 재무전략 목표와 시장경쟁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가감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 ⑥ 「COFIX(Cost Of Fund Index : 자금조달비용지수. 이하 “COFIX”라 함) 연동대출」에서 기준금리는 「단기 COFIX기준금리」, 「6개월·1년변동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기준금리」, 「6개월·1년변동 잔액기준 COFIX기준금리」와 「6개월·1년변동 신잔액기준 COFIX기준금리」로 구분하고 기준금리에 따라 매 3개월·6개월·1년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단기 COFIX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주기별로 고시하는 기준금리를, 「6개월·1년변동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기준금리」, 「6개월·1년변동 잔액기준 COFIX기준금리」와 「6개월·1년변동 신잔액기준 COFIX기준금리」는 각각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주기별로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와 「신잔액기준 COFIX」를 말하며, 그 적용 기간은 고시일 익일부터 각각의 금리변경 주기에 따른 전국은행연합회 고시일까지로 합니다.

제 3조 중도상환해약금

-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출기간만료일(기간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1조 제7호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중도상환대출금액은 대출기간만료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2. 「잔존기간은 중도상환일로부터 대출기간만료일 전일까지 잔존 일수로 하고 분할상환대출인 경우에는 각 할부금에 대하여 납입회차별로 계산하며 일부 중도상환시에는 분할상환기일에 먼저 도래하는 분할상환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개시일부터 대출기간만료일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잔존기간」은 중도상환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산합니다.
 3. 「대출기간」은 제1조 제4호의 대출개시일부터 대출기간만료일(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납입회차별 분할상환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개시일부터 대출기간만료일까지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만료일로 적용합니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 잔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3. Workout업체, 회생기업 등의 여신으로서 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대출금을 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4. 한도거래대출(통장대출 포함), 수요자금융, 금융중개지원대상대출을 제외한 외부 차입성대출
 5. 당행 예·적금 담보대출
 6.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7.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등과 상계하는 경우

제 4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원칙적으로 건별대출금의 기일까지 이자를 선납하는 대출은 각 건별대출금의 취급할 때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연체기간 동안 계속 적용합니다.

제 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차용총액은 최종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차용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6조 감액·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고 조달 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가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여력 부족 등으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기타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③ 제1항의 차주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란 경영실권자의 변동으로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신문 TV 등의 언론매체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7조 한도약정수수료

- ① 한도약정수수료 대상 대출한도의 여신거래 약정시(신규, 연기, 재약정 포함) 제1조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약정한도가 변경(감액, 해지, 해제, 정지)될 경우에는 약정한도 변경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약정한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당초 거래기한까지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환출합니다.
- ③ 약정한도를 증액할 경우에는 약정한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 8조 한도미사용수수료

- ① 은행과 약정한 여신한도금액 중 한도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한도미사용금액 및 한도사용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한도미사용금액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평잔'에서 '여신평잔'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2. '약정한도평잔'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의 평잔입니다.

3. ‘여신평잔’은 당좌대출 및 종합통장대출은 운용기간 중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이며, 그 외 여신은 운용기간 중 매일의 마감잔액에 대한 평잔입니다.

※ 매일의 적수=마감잔액+[일중 최고잔액-(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4. ‘한도사용율’은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을 약정한도평잔으로 나누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하여 산출합니다.

③ 미사용수수료율

한도사용율	20%미만	20%이상 ~ 40% 미만	40%이상 ~ 70% 미만	70% 이상
미사용수수료율	연 0.50%	연 0.30%	연 0.10%	면제

④ 운용기간 및 지급시기

1. 당좌대출 및 종합통장대출

- 전월대출이자 결산일의 익일(최초 약정시 약정일)부터 금월 대출이자결산일까지를 운용 기간으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이자결산일 익일에 지급합니다.
- 한도미사용수수료는 대출약정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 잔액이 예금인 경우에는 예금잔액에서 차감하고, 대출약정한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해 원가되지 않은 수수료는 추가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2. 그 외의 여신

- 최초 약정시에는 약정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최초약정월 다음 달부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운용기간으로 계산하여 매월 최초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미납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도내 개별여신 실행일에 지급합니다.

3. 기한연장 또는 약정해지시에는 기한연장일 전일 또는 약정해지일 전일까지의 미지급 수수료를 기한연장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며, 약정일 당일 해지시에는 당일분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4. 한도미사용수수료 납입 지연시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

- ①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 계좌 및 당좌예금(이하“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대출한도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초과로 이자 등이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이자(이하“미수이자”라 합니다)등은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갚기로 하고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⑤ 당좌대출의 경우, 제6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 ⑥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끝나는 날 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여신기간 끝나는 날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 됩니다.

- ⑦ 미수이자 발생 시점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급을 지체한 때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며, 그 다음날부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0조 약정기간 중 여신 재취급

- ① 제1조에 의해 취급된 여신과목에 대해 약정만기일 범위 내에서 재취급(타과목전환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기로 하며, 이 경우 은행이 정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재취급(대환)된 경우에도 본 약정을 계속해서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11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12조 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 13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 14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새로 씌·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 경우 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 원)

종별	증서번호 또는 계좌번호	명의인(본인) 또는 수탁자	예금잔액	담보한도액 [Min(여신한도액×110%, 예금잔액×110%)]	신규일자	만기일자
		수익자				

제 15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합니다.

구분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부채비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대주주(최대주주)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은행 앞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6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 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 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 17조 자금용도의 유용시 제재조치

- ① 대출금의 용도의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③ 용도와 유용 1차 확인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확인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됩니다.

제 18조 대출실행중단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9조 기타 특약사항

· 당행의 비대면 대출상품의 특징상 대출 신청 - 심사 - 실행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대출실행시점에 신용상의 변동(타행 대출 신청, 연체발생 등)이 있을 경우 실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 (전자서명)

1.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비대면채널 대출상품 서비스 이용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받았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고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대출 신청시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받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름
주소

(전자서명)

※ 본 약정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